2025년 경기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제7조의2 및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」제9조, 「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「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. 1. 15. 경기도지사

사업개요

- 1. 사 업 명 : 2025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
- 2. 참여대상 : 경기도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
- 3. 참여제외 대상

I

-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
- 유급근로자(자체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
- O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·전부를 지원받은 기업
-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4. 지원제외 대상
 - 대표자·등기임원 및 대표자·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
 - ①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
 - ② 대표자·등기임원의 형제자매

- ③ 대표자·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
- ④ 대표자·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
- (5) 대표자·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
 - *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는 지원가능하나, 그 근로자의 친족도 등기임원의 친족으로 지원 제한
-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
 -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
 - *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가입 확인 후 지원

5. 지원내용

- 지원한도 :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
- 지원내용 :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
 -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료* 및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연금보험료
 - *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
 -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,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
- 지원수준 :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* 고용보험 직업능력·고용안정 (0.25%), 산재보험 (0.5%)
 -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
 - * '25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10,030원,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
 -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12,760원
 - ·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4,100원(= 10,030원 × 209시간 × 1.15%)
 - ·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0,480원(= 10,030원 × 209시간 × 0.5%)
 - ·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3,850원(= 10,030원 × 209시간 × 4.0%)
 - ·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4,330원(= 10,030원 × 209시간 × 4.5%)
 - ① 만18세 미만 또는 만 60세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·산재·건강보험료 (지원한도≒118,430원)만 지원
 - ②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·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

용보험 해당부분·산재·건강보험료(지원한도=99.570원)만 지원

③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,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·건강·국민연금(지원한도≒188,660원)만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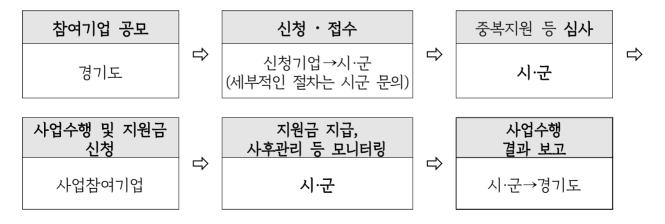
6. 지원기간

-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,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지원기간 4년*
 - *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이며, 예산 확보여부에 따라 지원중단될 수 있음
-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
 - 다만,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소급신청가능

Ⅱ 지원금 신청ㆍ접수

- 1. 접수기간 : 상시 접수 ('25. 2. 3. ~)
 - ※ 각 시·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요에 따라 운영
- 2.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"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해 신청"
 - ※ 서면접수 불가
 -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SEIS)에 4대 사회보험 종류별 금액을 명확히 입력 하여 신청
 - 시스템 문의 안내 :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(☎ 1661-4006)

3. 지원절차



○ 사업참여기업은 매월 보험료 납부 후 매월 15일까지 「지원금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·군수에게 제출

Ⅲ│제출서류

- 1.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[붙임 제1호서식]
- 2.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(계좌이체, 카드납부 내역,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)
- 3.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(처음 신청 시, 통장 변경 시)
- 4.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
 - *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, 건강·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,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
- 5. 급여이체내역서 1부
 - *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체 내역
- 6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1부
- 7.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최초 제출시) [붙임 제2호서식]
 - ※ 임금대장(자체 고용근로자 포함)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

Ⅳ 기타

- 1.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.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~500%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- 2. 2025년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(회계서류 일체)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확인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.
- 3.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2025년도 경기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업무지침(안)」을 따르며,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및 관할 시·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O 사회적기업 담당부서

구분	부 서	전화번호	구 분	부 서	전화번호
경기도	사회적경제육성과	8008-3583, 3587	광명시	사회적경제과	02)2680-6209
수원시	마을자치과	228-2354	하남시	일자리경제과	5182-1453
용인시	민생경제과	6193-2228	군포시	자치분권과	390-0940
고양시	소상공인지원과	8075-3723, 3724	오산시	지역경제과	8036-7583
성남시	지역경제과	729-3662, 3663	양주시	일자리정책과	8082-6092
화성시	사회적경제과	5189-3107, 6057	이천시	일자리정책과	644-4197, 4198
부천시	일자리정책과	032)625-2703	구리시	산업지원과	550-2044
남양주시	일자리정책과	590-8906, 8908	안성시	일자리경제과	678-2447
안산시	소상공인지원과	481-2609	의왕시	자치행정과	345-2132
평택시	미래전략과	8024-3522	포천시	일자리경제과	538-2275
안양시	고용노동과	8045-2945	양평군	일자리경제과	770-2208
시흥시	일자리총괄과	310-6055	여주시	일자리경제과	887-2287
김포시	일자리경제과	980-2749	동두천시	일자리경제과	860-2368
파주시	일자리경제과	940-5071	과천시	복지정책과	02)2150-3692
의정부시	일자리정책과	828-2373	가평군	일자리정책과	580-2326
광주시	지역경제과	760-2671	연천군	경제교통과	839-2457

○ 경기권역 지원기관 : 공모예정

[붙임 제1호서식]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10일

(ㅇㅇ년도 ㅇ월분)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

□ 신청개요

최초 지원개시일	0000.00.00.	지원만료예정일	0000.00.00.
기 관 명	대 표 자(주민번호) (-		
소 재 지		연락처(휴대폰)	
인증번호		사업자등록번호	
사업분야			
조직형태	1.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	사회복지법인 □ 소비자 협동조합연합회 □ 사회 회사법인 □ 기타 법인,	생활협동조합 적협동조합연합회
인증(지정)유형	□ 사회서비스 제공형 □ 일자리 저 □ 지역사회 공헌형(①[], ④[], ⑤[□ 혼합형 □ 기타형	공형	
근로자수	□ 총 유급근로자수: 명 □ □ 여성근로자수: 명 □	지원대상 근로자수: 취약계층 근로자수:	명 명
계좌번호	(은행명)	예금주:	
구 분	적용대상인원(명) 지원기간(개	월) 지원금 신청역	액 실 납부 사회보험료

구 분	적용대상인원(명)	지원기간(개월)	지원금 신청액	실 납부 사회보험료
합 계				
고용보험				
산재보험				
건강보험				
국민연금				
기타				

□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

	재정지원사업명	최초지원일	지원기간	지원연차
예비	일자리창출지원		~	
사회적	사업개발비지원		~	
기업	전 문 인 력 지 원		~	
이즈	일자리창출지원		~	
인증 사회적	사업개발비지원		~	
사외적 기업	전 문 인 력 지 원			
기합	사회보험료지원			

□ 중복지원 여부

구 분	부처(자치단체)명	지원받는 내용	지원기간	지원금액	비고
합 계					

^{*}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 (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)

위와 7	같이 人	l회보험료	지원을	신청합니	다
------	------	-------	-----	------	---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기초자치단체장 귀하

❖ 구비서류:

- 1.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(계좌이체, 카드납부 내역)
- 2.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(처음 신청 시, 통장 변경 시)
- 3.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
 - *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, 건강·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,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
- 4. 급여이체내역서 1부
 - *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
- 5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1부
- 6.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(최초 제출시)
 - ※ 임금대장(자체 고용근로자 포함)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

❖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

- 1.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,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(휴대폰번호)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2. 사업참여 제한 대상(사업참여기업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)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.
- 3.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 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.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~500% 이내에서 제 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
❖ 작성방법

1) 사업분야 구분

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·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

- 2) 최초지원일
 - 예비사회적기업: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
 - 인증사회적기업: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(사회적기업 인 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)
- 3) 지원기간: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
- 4) 지원연차: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
 - * 예시: 예비 1년, 예비 2년, 인증 1년, 인증 2년, 인증 3년
- 5) 중복지원여부: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 드시 기재해야 합니다(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)
 - * 예시: 사회보험료지원(두루누리사업)을 받을 경우

[붙임 제2호서식]

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1.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

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, 전문인력지원, 사업개발비,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(고용조정, 고용유지조치, 보험료, 임금체불 등)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,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	□예	□아니오
2. 4대보험료 체납이 있나요	□예	□아니오
3. 임금등 체불이 있나요	□예	□아니오
4.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이 있나요	□예	□아니오
5.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	□예	□아니오
5-1. 지원근로자 중 대표자,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친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	□예	□아니오
6.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나요	□예	□아니오
7.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나요	□예	□아니오

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* 사업참여 제한 대상(사업참여기업 대표자·등기임원의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, 직계존비속)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.

대표자: (서명 또는 인)

2. 사업장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

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, 전문인력지원, 사업개발비,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 집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- 사업장정보의 수집·이용·목적: 참여자 선정·관리,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,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, 휴·폐업여부 조회, 임금체불 조회,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
-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: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전화번호(휴대폰)
- •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- 사업장정보의 제공: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,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

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·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기부등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 (서명 또는 인)

성 명	
주 민 등 록 번 호	-
전 화 번 호 (휴 대 폰)	